

2017년도 KIRD 자체감사(종합감사) 결과 공지

1. 근거

- KISTEP 감사규정 제16조 제2항(종합감사)
- 2017년 자체감사(종합감사) 실시 계획(감사부-190;2017.6.7.)
-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도 협동감사제도 운영계획 통보(감사담당관-1890;2017.6.2)

2. 대상부서 및 감사범위

- 대상부서 : KIRD 전 부서
- 감사범위 : 2016. 11. 1. ~ 2017. 10. 31(1년간) 수행업무

3. 감사반 : 총 5명 / 내부 2명, 외부 협동감사인 3명

4. 감사기간 및 장소: 2017.11.27 (월) ~ 11.30 (목) / KIRD 106호 회의실

5. 감사결과

구분	지적건수			처분결과	계
	기관운영	시설구매	연구관리		
자체감사 (종합감사)	5건	1건	1건	통보 2건 개선 4건 주의 3건(8명) 시정(회수) 1건 (2,401천원) 경고 1건(2명)	11건

붙임 : 감사 주요 지적사항 1부.

1. 유형별 지적건수

구 분	통보	개선	주의	시정	경고	계
지적건수	2	4	3	1	1	11

2. 지적사항

번호	지 적 내 용	처 분	비 고
K2017-01	외부강의 등에 따른 국내출장비 지급 부적정	기관주의·개선	경영기획실
K2017-02	일상감사 업무범위 시행 부적절	기관주의·개선	경영기획실
K2017-03	공용차량 관리기준 마련	개선	인사총무실
K2017-04	부설기관 운영규정 미 준수	통보	경영기획실
K2017-05	내부직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부적정	개선	인재개발 기획실
K2017-06	용역계약 검사업무 등 부적정	시정·주의·경고	인사총무실 등
K2017-07	위탁연구와 용역의 구분기준 불명확	통보	경영기획본부 인력개발연구센터

3.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계획

처분	지 적 내 용	비 고
기관 주의 ·개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강의 등에 따른 국내출장비 지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강의 시 지급되는 국내출장비는 직무수행 및 원무로 지급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, -외부강의등의 요청사유와 출장비 지급계정의 사업목적 간 부합하지 않게 지급하여 인력개발원 예산의 부적절 집행을 초래한 바, ○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출장비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·감독을 촉구하며, 관련 출장비 지급 제도 개선바람. 	경영기획실
기관 주의 ·개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상감사 업무범위 시행 부적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IRD 일상감사범위에 해당하는 중·장기 발전계획수립, 고정자산 처분 등 의 업무추진 시 일상감사를 누락한 바, ○ 일상감사 대상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, 「KIRD 일상감사 범위」를 수정바람. 	경영기획실
개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차량 관리기준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 공용차량 등 공용재산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의 사적 사용·수익이 금지되나, -직원들의 퇴근·출근용으로 1년간 총 157회 사용된 바 ○ 행동강령에 부합한 공용차량 관리기준을 마련·시행바람 	인사총무실
통보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설기관 운영규정 미 준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관에 따라 중요규정(직제규정, 인사규정, 급여규정 등)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,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장기차입금/주요자산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평가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, -감사 대상기간 중 인사세칙, 급여세칙 등의 개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공식적 협의가 부재하였던 바, ○ 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기 바람 	경영기획실
개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직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부 강의/회의 시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 내부 직원에게 원고료, 회의 참석비 등을 지급할 수 없으나, 	인재개발 기획실

처분	지 적 내 용	비 고
	<p>-전문가 활용요령에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에게 원고료 또는 강사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, ○내부직원이 소관 사무의 강의 및 회의 참석 시 관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.</p>	
시정· 주의· 경고	<p>□ 용역계약 검사업무 등 부적정 ○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일정액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, -1건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체일수(17일)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회수하지 않은 바, ○해당 지체상금(2,401,250원)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,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람.</p>	<p>인사총무실 등</p>
통보	<p>□ 위탁연구와 용역의 구분기준 불명확 ○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위탁연구와 일반 기술용역의 구분기준은 물론 실제 혼용되어 집행되고 있는 바, ○위탁연구와 연구성 학술용역의 명확한 구분기준 마련</p>	<p>경영기획본부 인력개발연구센터</p>